

현장신고

현장신고한 경우 근로일수

Q | a라는 사람이 네 개의 현장을 3일씩 일했는데 각 현장별로 보면 가입대상이 아닌데
일용직사업장적용신고를 안해줌으로써 총 근로일수가 12일이 돼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근로내용신고는 각 현장별로 사업개시신고 포함 다 한 상태이다.

A | 현장별로 고용산재의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왔더라도 현장별 건강
연금 현장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개월이상 8일이상 대상자가 없더라도 현장들을 모두 합
쳐서는 대상자가 있으므로 건강연금가입대상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는 현장별 노임
대장과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과태료와 가입대상입니다.

건강 및 연금 보험 신고 시 지연 신고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므로
몇 개월 전 근로자에 대한 건강 및 연금 보험 신고도 가능.

다만, 건강 및 연금 보험을 신고한 후 고지서가 나오고 납부 기한일 까지 납부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액의 월3%,익월부터는 1%가 더 추가되어 4%,익이월부터는
5%,6%,7%...

최대9%까지 연체금이 붙음.

건강연금 지연신고 과태료는 없지만 납부에 대한 연체료가 있음

국민연금 EDI 건설일용직신고

Q | 국민연금EDI매뉴얼에 건설 일용직신고도 4대 공통신고서를 참고하라고 되어있다.
신고창을 열면 4대 공통신고서 탭에도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항목이 있고,
건설일용직신고서 탭에도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있는데 어디서 하는지?

A | 건설 일용직 탭에서 하시면 됩니다.

사후정산과 현장신고

Q | 사업장 관리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내역서에 사후정산 내용이 기재되어있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내역서상에 건강보험료-금액/국민연금-금액 이렇게만 나와있어도 사후정산이라고 보고 관리번호 부과신청하면 되는건지?

A | 내역서에는 연금 건강 금액만 나와있어도 현장신고가 가능하지만, 1개월 이상 공사하고 하도급에 대해 사후정산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표기된 경우를 말하며, 현장신고로 납부한 건강연금보험료중 사업주 부담분만 정산해주는 것이며 근로자 부담분은 정산대상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상용직은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나 간혹 관급공사에서 상용직근로자가 분리적용 후 전출입신고를 한 경우 사후정산해주시기도 합니다.

Q |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시다 10월1일부터 우리 본사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그전에는 일용직으로 현장 4대보험 신고를 해드렸다.
10월부터는 본사 직원으로 취득 신고를 새로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9월1일자로 보수 변경신고를 한 상태이고 현장 사업장관리번호로 우리현장 관리번호로 상실신고를 해야 본사로 취득신고가 가능한건이며 또 바로 현장 관리번호로 바로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지?

A | 현장일용직이 본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시고 본사에 입사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문구

Q | 사업장 적용신고 할 때 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 여부가 포함 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계약서 쓸때 서로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하는가? 관급 공사일때는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때엔 어떻게 명시를 해야 하는지?

A | 표준계약서에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변경신고

Q | 취득신고, 상실신고는 건강보험EDI 혹은 국민연금EDI에서 하면 된다고 되어있는데 나중에 변경신고까지 고려한다면 건강보험 EDI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지?
그리고 소득월액은 소득세나 연금보험 등등 공제된 금액 말고 노무비 총액을 적는건지?

A | 보수변경신고는 건강보험EDI, 연금보험EDI 각각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전금액을 써주시면 됩니다.